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4년 6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

I

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

- 2,340명에게 24시간·주간개별·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*가 6월 11일(화)부터 전국 17개 시·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** 된다고 밝혔다.

* (법적근거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('24.6.11 시행)

** 6월 중 광주, 경기, 경남, 경북, 부산, 서울, 인천, 세종, 전북, 충남,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

-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(자해·타해)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: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(340명),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(500명), 그룹형(1,500명)으로 총 2,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.

〈유형별 서비스 내용〉

	24시간 개별 지원	주간 개별 지원	주간 그룹 지원
지원인원	340명	500명	1,500명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자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
제공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주간) 09:00~17:00 ■ (야간) 17:00~09:00 *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주간) 10:00~17: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주간) 09:00~18:00 ■ 일 최대 8시간 ■ 월 최대 176시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말 공휴일 휴무 (대체공휴일 운영 가능) 		

-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 전행동, 의사소통능력,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·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*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129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·도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.

* 통합돌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, 시·도 담당공무원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, 의료·보건·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구성

-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 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,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053. 장애인서비스과 2024. 6. 10.

참고 **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**

■ 추진배경

-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(자해·타해 등)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돌봄 필요

*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최중증 10.4시간, 비최중증 4.1시간('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)

■ 추진경과

- 국정과제로 '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' 선정('22.5월)
-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, 자립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개정('22.6월, '24.6.11 시행)
-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('22~'24, 광주광역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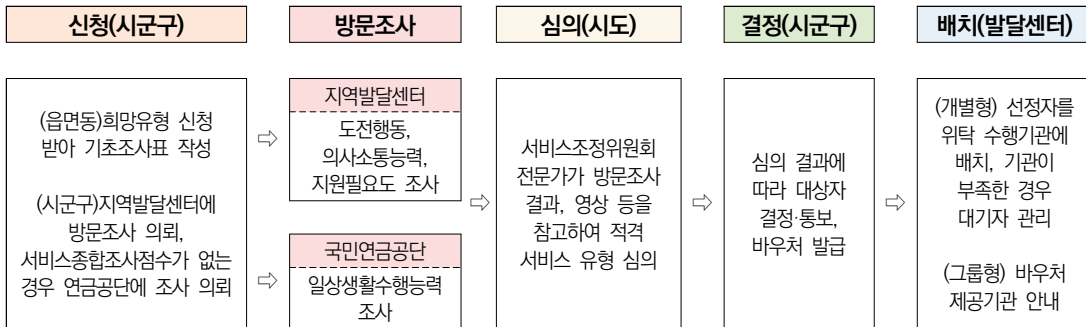
■ 서비스 대상

- (신청자격)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·자폐성 장애인
- (지원대상)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,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,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
〈 최종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〉

구분	항목	세부 항목	배점
Ⅰ. 핵심 구성요소(70점)	도전행동		0~40점
	일상생활능력	일상생활능력점수	0~20점
		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	
의사소통능력		0~10점	
Ⅱ. 지원 필요도(10점)	개인특성(3점)	건강·장애특성	0~3점
	사회환경특성(7점)	가정내 보호체계	0~7점
Ⅲ.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(5점)	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		0~5점
Ⅳ.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(15점)	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		3~15점
합계			100점

〈 대상자 선정 절차 〉



■ 지원 내용

* ('24년 예산) 총 1,246억원(국비 722억 원+지방비 524억 원)

-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:1 맞춤형 서비스 제공('24년 총 2,340명)

- ① (24시간 개별 지원)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*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(340명)
* 산책, 체육, 음악,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
- ② (주간 개별 지원)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(500명)
- ③ (주간 그룹형 지원)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(1,500명)

II

“노인학대 예방, 신고가 힘이 됩니다”

-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-
-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호 권고기준 마련 -
-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, 노인학대 신고앱 ‘나비새김’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4일(금)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(서울 마포구 소재)에서 「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」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,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,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*을 진행했다.

*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

-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▲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▲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▲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▲ 명예사 김지기단 가수 박시환, 안다운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하였다.

- 또한 ‘노인학대 예방의 날’을 맞아 ▲ 노인학대예방 ‘나비새김 캠페인’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하고,

▲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 광고를 송출하고, ▲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 근절 집중 추진 기간(6.1~6.30)을 운영했다.

■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.

* (총 40점) 국민포장 1점, 대통령표창 2점, 국무총리표창 4점, 장관표창 33점

【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】

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「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」를 발간하였다.

〈 2023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 〉

- ◆ (노인학대 신고) 21,936건으로 전년대비 12.2% 증가
 - ('21) 19,391건 → ('22) 19,552건 → ('23) 21,936건
- ◆ (노인학대 판정) 7,025건(신고 21,936건의 32%)으로 전년대비 3.2% 증가
 - ('21) 6,774건 → ('22) 6,807건 → ('23) 7,025건
- ◆ (노인학대 행위자) 배우자(2,830건, 35.8%)로부터 학대 지속 증가
 - * ('20) 아들(34.2%)-배우자(31.7%) → ('21) 배우자(29.1%)-아들(27.2%) → ('22) 배우자(34.9%)-아들(27.9%)
- ◆ (학대피해 어르신) 69세 이하, 치매진단 어르신 학대사례 꾸준히 증가
 - 69세 이하 어르신 사례: 매년 증가 추세
 - * ('21) 1,428건(21.1%) → ('22) 1,467건(21.6%) → ('23) 1,655건(23.6%)
 - 치매진단 어르신 사례: 매년 증가 추세
 - * ('21) 1,092건(16.1%) → ('22) 1,170건(17.2%) → ('23) 1,214건(17.3%)
- ◆ (재학대 현황) 759건으로 전년대비 7.1% 감소, '22년까지 다소 증가되다가 '23년에 감소
 - * ('20) 614건 → ('21) 739건(20.4%) → ('22) 817건(10.6%) → ('23) 759건(△7.1%)
- ※ 노인보호전문기관(상담원) 상담: 225,589회로 전년 203,884회 대비 21,705회 증가

■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,936건이고,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,025건(신고대비 32.0%)으로 나타났다.

○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.2% 증가하였으며('22년 19,552건 → '23년 21,936건), 이 중 학대사례건수는 7,025건으로 전년('22년 6,807건) 대비 3.2% 증가하였다.

○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,079건(86.5%)으로 가장 많았고, 시설 679건(9.7%), 병원 115건(1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○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,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(3.6%) 증가한 반면,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(△ 4.9%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,830건(35.8%), 아들 2,080건(26.3%)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-배우자 순에서 배우자-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,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.

* ('21) 배우자(29.1%)-아들(27.2%) → ('23) 배우자(35.8%)-아들(26.3%)

○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(39.0%), 자녀동거가구(28.2%), 노인단독가구(15.9%) 등의 순으로,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*를 보이고 있다.

* '19년(31.8%) → '20년(32.7%) → '21년(34.4%) → '22년(36.2%) → '23년(39.0%)

■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하였다.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.6%('22년 203,884회 → '23년 225,589회) 증가하였고, 학대상담은 6.3%('22년 159,402회 → '23년 169,423회), 일반상담은 26.3%('22년 44,482회 → '23년 56,166회) 증가하였다.

○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,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하였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,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(69세 이하 어르신) ('21) 1,428건(21.1%) → ('22) 1,467건(21.6%) → ('23) 1,655건(23.6%)

* (치매진단 어르신) ('21) 1,092건(16.1%) → ('22) 1,170건(17.2%) → ('23) 1,214건(17.3%)

○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.8%(759건)로 전년('22년 817건) 대비 7.1% 감소하였다. 가정 내에서 발생(745건, 98.2%)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.

○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·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,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시상담원이 상담, ICT 모니터링 기기*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

여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.

*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AI('22) 상담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속추진('23~)

【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재학대 예방대책 강화】

■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,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한다.

■ 첫째,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.

○ ‘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’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, 의료기관,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(법제39조의17 '24.2.6. 개정, 8.5.시행)

○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, 명칭,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·군·구명,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점검·확인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(법시행령제20조의16 '23.12.5.개정, 12.14.시행)하였다.

■ 둘째, 노인학대 신고앱 ‘나비새김(노인지킴이)’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.

○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‘나비새김’은 2021년에 개발되어,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누적 2만여 명 정도가 신고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.

-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,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·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(입원)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앱 ‘나비새김(노인지킴이)’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신고 앱 ‘나비새김’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■ 셋째,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*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.

*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는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AI(‘22)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속추진(‘23-)

〈 ICT 모니터링 기기 SOS 응급상황 발생 사례〉

- 2023년 7월경 학대피해노인(A씨, 74세, 여)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를 설치 후 학대행위자(B씨, 76세, 남편)가 주취 상태로 학대피해노인을 흉기로 위협하였고 학대피해노인은 ICT 모니터링기기에 “아리아, 도와줘”라고 SOS 구조 요청하여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 연계하고, 경찰이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분리시키고 학대피해노인은 안전 조치 실시
- 이후 학대행위자 병원 입원 유지 여부 모니터링 및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지지 상담을 위한 사후관리 상담 프로그램 지속 제공

■ 넷째,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다.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시설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·운영 의무화(‘23.6.22 시행) 하였고 ’23년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
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* 시설 내 학대 건수: (‘22) 714건 -> (‘23) 679건 (4.9%)

- 노인학대 발견·보호·예방 등을 전담하는 ‘노인보호전문기관’(전국 38개소) 및 ‘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’(전국 20개소)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(인프라)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- 다섯째, 노인복지법 개정*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‘노인학대보호 권고기준’을 수립하여 배포한다. 권고기준 확산 및 준수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행방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.

*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 개정(23.5.2.)

- 노인학대보호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학계, 언론계, 노인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보도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하고,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, 여성가족부, 경찰청, 방송통신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.

- 여섯째,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.

-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‘새김 리플라이(Re-fly)’ 캠페인*을 진행하고,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두 달간(6.15~8.14) 진행하며,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‘노인학대 예방·근절 집중 추진 기간’을 운영할 계획이다.

*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들의 노인인권보호 약속 선포 및 국민 참여 독려 이벤트(신고앱 다운로드 챌린지)

-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“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강조하며, “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067. 노인정책과 2024. 6. 14.

III

K-바이오·백신 2호 펀드(프리미어파트너스) 1566억 원 규모 결성 완료

- 정부 등 공동 출자 600억 원, 민간 출자 966억 원 확보, 결성목표액(1500억 원) 초과 달성 -
- 바이오펀드(1·2호) 총 3066억 원 결성 완료, 3·4·5호 연내 조성 추진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4일(금)자로 K-바이오·백신 2호 펀드(주관 운용사 프리미어 파트너스)가 정부 및 국책은행 600억* 원과 민간 966억 원 출자를 통해 최종 1566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하였다고 밝혔다.

* 정부 350억 원, 한국산업은행 175억 원, 한국중소기업은행 75억 원

■ 동 펀드는 작년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*하여 조기 투자를 시작하였으며,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다.

* 최소 결성액(70%)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

■ 2호 펀드의 성공적 결성으로 작년 11월 8일 1500억 원 규모(정부·국책은행 600억 원, 민간 900억 원 출자)로 결성한 1호 펀드(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)와 합산하면 총 3066억 원이 결성되었다.

■ 제약·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~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,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, M&A 등 혁신 제약·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.

■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24일, '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·지원 종합계획(2023~2027)'에서 K-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■ 이에 따라 3호 펀드 또한 조성 진행 중이다. 올해 2월 13일(월) 'LSK 인베스트먼트(대표 김명기)'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출자금 모집 중이다. 동 펀드는 2024년 7월 말까지 결성(1000억원 목표)되어 투자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이어서 각 1000억 원 규모의 4호·5호 펀드 주관 운용사를 공모하여, 올해 말까지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“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여건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K-바이오 1호 및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히며, “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3·4·5호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083. 보건산업진흥과 2024. 6. 18.

IV

공공임대주택,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

- 복지부·국토부 협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 교육 실시 -
-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종사자 총 600여 명 참여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9일(수), 20일(목) 양일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과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.
-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혜택 정보를 한 데 모아 매년 책자로 발

간하는 '자립정보북'과 '자립정보 ON' 홈페이지(jaripon.ncrc.or.kr)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해왔으나,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협업하여 직접적인 주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「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」의 일환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2,000호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전세임대의 경우 22세 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.
-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상담창구인 '유스타트 상담센터(1670-2288)'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.

〈 자립준비청년 대상 LH 공공임대 유형별 주거지원 〉

건설임대	• LH가 건설하여 공급·운영하는 주택 (영구·국민·행복주택)	• 임대보증금 100만 원, 임대료는 시세 30~80% 수준
매입임대	•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·운영하는 주택	• 임대보증금 100만 원, 임대료는 시세 40% 수준
전세임대	•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	• 임대보증금 100만 원,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 연 1~2% ※ 22세 이하 무이자, 입주 5년 이내 이자 50% 감면

- 이번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교육 대상은 자립선배 멘토단인 '바람개비서포터즈'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전국 아동복지시설* 자립지원 종사자로, 사전 신청 결과 총 600여 명이 신청하였고,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.

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지원센터, 자립지원전담기관 등

- 세부 교육 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하였으며,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혜택, 신청 방법,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뤘다.
- 이번 교육을 수강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종사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극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현수업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주거·취업·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090. 아동보호자립과 2024. 6. 19.

V

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6.25.) -
-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규정 -
-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수행 등 근거 마련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25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 마련〉

-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,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*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**를 마련하였다.

* ①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, ②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, ③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, ④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

** 사회보장급여법 개정('24.1.2. 공포, '24.7.3. 시행):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- 이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*를 부여받아 11개 유형**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.

*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(13자리)

** ① 기초생활보장급여, ② 의료급여, ③ 긴급복지지원, ④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, ⑤ 보육서비스이용권, ⑥ 유아교육비, ⑦ 첫 만남이용권, ⑧ 한부모가족지원, ⑨ 초중등교육비지원, ⑩ 보호출산지원, ⑪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

〈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〉

■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

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'23.10.31.) 및 시행('24.7.19.)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(아동권리보장원) 및 지역상담기관*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.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,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*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기관(전국 16개소)

■ 사회서비스원 시스템 사용 근거 명확화

- 시·도 사회서비스원*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.

*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 지원하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·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(지방출연기관)

-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“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”라며,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105. 급여기준과 2024. 6. 25.